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67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66호, 2020.07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0년 7월 30일

보건복지부 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.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 별 검 사 의 급여기준	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핵산증폭법]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(1시간 내 검사완료)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- 다 음 -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												
		<p>가. 급여대상</p> <p>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* 내원환자로서, 중증응급환자**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**</p> <p>*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</p> <p>**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의3(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)에 따른 「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」 고시 참고</p> <p>나. 적용수가</p> <p>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,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 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64 1211 1401 1648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적용수가</th> <th>청구코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</td> <td>누-658 라. 핵산증폭-정성그룹4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</td> <td>D6584, 세부코드 98</td> </tr> <tr> <td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</td> <td>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</td> <td>D6584, 세부코드 99</td> </tr> <tr> <td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폐렴유발균)</td> <td>누-680 나. 핵산증폭-다중그룹2 소정점수</td> <td>D6802, 세부코드 9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다. 인정횟수</p> <p>1) 응급실 내원시 1회 급여하며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***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</p>	유형	적용수가	청구코드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	누-658 라. 핵산증폭-정성그룹4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	D6584, 세부코드 98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	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	D6584, 세부코드 99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폐렴유발균)	누-680 나. 핵산증폭-다중그룹2 소정점수	D6802, 세부코드 98
유형	적용수가	청구코드												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	누-658 라. 핵산증폭-정성그룹4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	D6584, 세부코드 98												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	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	D6584, 세부코드 99												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바이러스 폐렴유발균)	누-680 나. 핵산증폭-다중그룹2 소정점수	D6802, 세부코드 98												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		<p>확진검사 (청구코드 D6584, 세부코드(04))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</p> <p>**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</p> <p>2) 단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</p> <p>2.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질병관리본부 예규 「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</p> <p>1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</p> <p>2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, 폐렴원인균)</p> <p>나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</p> <p>1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</p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		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
I. 행위 제2장 검사료			I. 행위 제2장 검사료		
<u>누658</u> <u>핵산증폭</u>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	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핵산증폭법]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(1시간 내 검사완료)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- 다 음 - 가. <생략>	<u>누658</u> <u>핵산증폭</u> <u>누680</u> <u>핵산증폭</u>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	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핵산증폭법]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(1시간 내 검사완료)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- 다 음 - 가. <현행과 같음>

현 행			개 정														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											
		<p>나. 적용수가</p> <p>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<u>누-658 라. 핵산증폭-정성그룹4-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를 산정</u> (단,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,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(98)로 기재)</p>			<p>나. 적용수가</p> <p>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<u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</u> <u>검사 유형에 따라 표와 같이 수가를 적용</u> 하며,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기재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473 794 2078 1216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적용수가</th> <th>청구코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</td> <td>누-658 라. 핵산증폭-정성그룹4-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</td> <td>D6584, 세부코드 98</td> </tr> <tr> <td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</td> <td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</td> <td>D6584, 세부코드 99</td> </tr> <tr> <td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 원인균)</td> <td>누-680 나. 핵산증폭-다중그룹2 소정점수</td> <td>D6802, 세부코드 9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	적용수가	청구코드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	누-658 라. 핵산증폭-정성그룹4-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	D6584, 세부코드 98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	D6584, 세부코드 99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 원인균)	누-680 나. 핵산증폭-다중그룹2 소정점수	D6802, 세부코드 98
유형	적용수가	청구코드															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	누-658 라. 핵산증폭-정성그룹4-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	D6584, 세부코드 98															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소정점수	D6584, 세부코드 99															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 원인균)	누-680 나. 핵산증폭-다중그룹2 소정점수	D6802, 세부코드 98															

현 행			개 정		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
		<p>다. <생략></p> <p>2.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<u>질병관리본부 예규 「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」</u>에 따라 지정을 받은 <u>요양기관</u>으로 하되,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.</p>			<p>다. <현행과 같음></p> <p>2.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<u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아 래 -</p> <p>가. <u>질병관리본부 예규 「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」</u>에 따라 지정을 받은 <u>요양기관</u></p> <p>1) <u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 응급용 선별검사 I</u></p> <p>2) <u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</u></p>

현 행			개 정		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
					<p><u>응급용 선별검사 III (COVID-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, 폐렴원인균)</u></p> <p><u>나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</u></p> <p><u>1)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핵산증폭법]</u> <u>응급용 선별검사 II</u></p>